

2004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

김 대 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I. 머리말

금년도에는 지난 1. 13 공포된 지방분권 특별법에 따라 『지방분권』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고 있으며, 지방세의 확충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하는 등 여러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지방세의 대폭적인 확충을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재원이 편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형평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하게

나타났었다. 가산세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재산세 등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도 시가에 부응하여 과세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형평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 투명성에 대한 요구와 다양한 납세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더 늘어날 전망이고, 전자정부시대의 개막과 지방세정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편리한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개발·보급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지방세정의 운영방향은 첫째, 지방세수 확충 및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둘째,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정운영, 셋째, 지방세정의 정보화 및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의 발굴, 넷째, 지방세정 운영의 전문성·능률성 제고 등이 중점



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II. 2004 지방세정운영 방향

1.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

가. 2004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금년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지방세 예산액은 31조 9,74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11.1%가 증가한 규모이다. 이에 따른 지방세수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세원관리 취약분야의 수시 점검, 세원관리부서와의 협조체계 강화, 지방세 과세자료의 D/B화 구축,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사후관리 노력 강화, 불성실 신고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등 지방세 세원의 체계적·과학적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각 시도별 지역경제상황 등 지방세 징수여건을 정밀분석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현행 지방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세 탄력세율 운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특수세원의 개발 등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도입문제,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문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협조체제의 구축이 절실한 시기라고 보아진다.

나.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 및 합리적 운영

금년도에도 토지·건물·기타물건 등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결정고시된 과표가 시가변동 등 기타 사유로 불합리한 경우에는 즉시 변경고시하는 등 과표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취득세·등록세 토지과표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불형평한 경우 토지과표 적용시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실태를 분석하여 매우 불합리한 것이 발견되면 지가산정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시가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위산(違算)·오기(誤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과세권자가 정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지난해말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200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도록 법정화되었다. 2006년도부터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을 50%로 적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차별 과표 인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건물과표의 경우 금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기존의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을 폐지하고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감산율을 적용토록 개선되었다.

금년에 개선된 부분에 대한 적용을 철저히 함과 더불어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각종 지수·가감산율 등 적용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재산세의 부과전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등 가격 등락이 심한 과세대상물건의 시가변동에 따른 가격조사와 시가표준액의 변경고시를 적기에 시행하여 납세자들의 불만해소와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 추진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과년도분은 징수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추세에 있으므로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도에는 「현년도 징수율 97% 달성, 과년도 체납액 25% 이상 정리」를 목표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세정부서에 체납정리팀을 신설 및 보강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질적·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기분 세목의 홍보 및 신고납부세목의 관련기관 안내강화 등 체납액의 발생예방을 위한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상습체납자의 사법기관 고발,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요청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동시에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도 강화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체납세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하되 결손처분이후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라. 지방세 세원관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노력 강화

지방세 세원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는 지방세 과세대상의 일제정비, 지방세정의 정보화,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고 비과세·감면자료의 일제조사 및 사후관리 등도 필요하다.

지방세 과세대상의 일제정비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 과세대상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과세누락·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정기분 세목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과세누락, 비과세·감면대상여부, 소유자변동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과세에 반영하고,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매년 시도, 시군구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부의 세원

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조사된 세원에 대한 세부내용 등 관리 는 D/B화 하는 등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탈루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신고납부 미 이행·과소신고납부 등 누락세원의 포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지방세의 탈루의혹 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정밀 하게 실시하되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등 친절하고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겠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은 금년도의 경우 2004. 2월말까지 전년도의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한 자료를 감면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정확한 비과세·감면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비과세·감면이 적정 했는지 여부, 추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비과세·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 지방세 비리방지대책의 지속 추진

지방세 취약요소에 대하여 집중·반복적인 점검을 통하여 비리유발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지방세 수납검색체계의 완벽한 구축과 세무비리 발생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개선하여 비리예방 시스템을 가동함과 아울러 감사 및 지도점검을 강화 하여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해야 한다.

또한 정기감사시에 취약분야를 필수적인

감사항목으로 선정하고, 그 밖에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항목은 선택적인 감사항 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특히 새로운 유형의 비리발생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는 정밀감사를 실시하여 비리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법원배당금·소액현금 등 현금수납분야는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등록세등 수납 사항, 도축세·주민세 등 특별징수의무자 등은 주기적인 점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기타 비과세·감면사항 등도 반드시 사후관 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

가. 신고와 납부 분리에 따른 가산세 운영

지난해에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 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03헌바 15, 2003. 9. 25)이 있음에 따라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방법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제도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분리하여 각각 적용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 개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취득세 기한후 신고제도 등의 내용을 철저히 연찬하여 착오가 없도록 적용함과 아울러 취득세 가산세 부과대상이나 헌법불합치 결

정 이후 과세유보된 가산세 부과를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내용 등을 관련기관에도 충분히 안내하여 제도개선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해야 하겠다.

나. 건물과표 시가가감산을 적용

그간 건물과표 산정시 주로 면적을 위주로 산정됨으로써 서울 강·남북간, 서울·지방간 등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04년도부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기존의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을 폐지하고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가가감산율을 적용토록 개선하여 과세형평성을 강화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가가감산을 도입에 따른 건물과표 산정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세청기준시가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가를 조사하여 조사된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가감산율을 적용하거나 기존의 면적이감산율을 적용하여 건물과표를 산정하되 기존의 면적이감산율을 적용할 경우 과세불형평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조사하여 시가가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납세고지서 관리 강화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의 확정 효력의 문제 및 체납처분의 적법성과 직접 관련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반드시 법령에 정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납세고지서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

한·장소, 연도와 세목,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수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근거를 마련하고, 고지서 송달은 송달 입증책임 문제가 있으므로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되 정확한 납세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도록 사전에 주민등록 DB와 연계하여 확인하는 등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금년도부터는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부과고지 세목에 한함)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징세비를 최소화하고 송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겠다.

라. 과오납금 줄이기 및 환부업무처리 철저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줄여 공평과세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실현하고 나아가 과오납을 신속하게 환부하여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야겠다.

과세권자의 이중과세·착오부과,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의해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세원관리의 전산화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의 구축을 통한 정확한 과세, 지방세 납세안내·홍보 등을 강화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확인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정확한 환부이자와 함께 신속하게 환부하여야 할 것이다.

과오납 사실을 모르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미환부된 과오납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신속하게 납세자에게 되돌려주고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미환부금은 적기에 세입처리를 확행해야 하겠다.

3. 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 발굴 · 실천

가. 납세자 본위의 세정운영 기반 정착

오늘날 세정운영의 방향은 과세권자 위주에서 납세자 위주의 세정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지방세에 있어서도 '97. 10. 1부터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지방세정인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제출한 각종서류 등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과세정보의 비밀보호,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지켜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과세관청은 과세전에 과세예고 통지등에 따른 불복이 있는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이의신청등 불복에 대비하여 불복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세 구제업무처리시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의 관계서류 열람 · 의견진술 및 구술

심의 신청 등 준사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납세자 권리구제제도가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방세정 정보화의 지속 추진

지방세정의 효율화 · 신속화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정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관련 업무와의 통합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지방세정의 정보화는 세원관리, 부과징수, 민원처리 등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정보화체계를 구축하고, 외부행정망과의 연계를 통한 신속 · 정확한 세원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안방에서 납부,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겠다.

지방세 종합정보화 체계의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체계구축을 완료하고, 지방세 전산코드를 지속적으로 개선 · 정비하며, 체납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료를 정비하고 세원 · 과세누락 방지를 위하여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 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주민 · 자동차 · 토지 · 건축망 등과 연계를 통하여 과세자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납부제, PC뱅킹, 폰뱅킹, 자동이체 납부제등은 더욱 확대 · 보급 될 수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세 인터넷 고지제를 도입토록 추진하여 납세편의와 행정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지방세 민원의 적극 처리

지방세 관련 민원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어 적법·신속·공정한 업무처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지방세 민원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실 확인 또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철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가능한 민원처리의 법정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여야 하겠다.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방세분야의 사이버질의 등 민원의 경우도 서면질의에 준하여 관리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보강하여 지방세 관련사항을 충분히 홍보하여 지방세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세 사이버민원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납세자의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야겠다.

라. 지방세 납세홍보의 강화

21세기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홍보기법 등을 지방세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고 납세자가 부담한 세금은 내고장의 공공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에 사용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

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지방세 현황 등 최신내용을 충실히 담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Cable TV와 뉴스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협조하여 지방세의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홍보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방법과 더불어 개별납세자의 납세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맞춤형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개별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차원의 홍보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내의 타부서나 외부행정기관의 업무추진에 있어 지방세 관련 안내·홍보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업무별로 지방세 관련분야의 안내·홍보문안을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송부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업무추진시 지방세 관련사항을 안내·홍보토록 협조하는 방법으로 개별안내·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지방세 홍보시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추어 시행하고, 지방세 정기분세목에 대하여는 광역 또는 전국단위의 홍보를 실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세정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지방세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 지방세정인의 양성을 위해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 및 지방세 직무연찬회 등을 강화하면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방세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중 전국차원의 교육을 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정개설이 곤란한 분야의 교육은 중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실무위주의 교육은 지방단위로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회계·부기 등 전문교육은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체계가 바람직 할 것이다.

지방세 직무연찬회의 경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자체 연찬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규모 연구모임의 육성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금년도 중앙단위 지방세 업무연찬회 개최를 위한 과제발굴 등 사전준비도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정에 적극적으로 협조 할 수 있는 지방세 전문가 집단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전문가를 선정·관리하여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위촉, 활용하고, 지방세관련 세미나·공청회 개최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세에 친화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가야 하겠다.

아울러 지방세정의 평가·환류를 통한 지방세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공무

원 및 시군구에 대하여는 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분야의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III. 맺음말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을 것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지방분권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지방세 담당자들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분권에 따른 소요재원을 국가로부터 이양을 추진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과표현실화 등을 통하여 지방세를 확충함과 더불어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의 운영 과정에서 탈루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각 세무공무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자기의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추구하여 나가야겠다.

아무쪼록 지방세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함과 아울러 우리의 고객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